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55호(號) 1935(昭和 10)년 3월 22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73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5(昭和 10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3월 2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제1항(項)제8호(號)를 제9호(號)로 개정(改正)하고 이하(以下) 순차적(順次的)으로 내리며, 제8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8 신청서(申請書)란 화물운송신청서(貨物運送申請書).

제10조(條) 하송인(荷送人)은 아래[左]의 종별(種別)에 의(依)해 화물탁송(貨物託送) 때 1구(一口)마다[每] 제12조(條)제1항(項)에 게시(揭示)한 사항(事項)을 신고(申告)하는 것으로 함.

1 운송장(運送狀)으로 신고(申告)한 것 요상액(要償額)을 표시(表示)한 화물(貨物), 인환증(引換證)을 청구(請求)한 화물(貨物), 대금인환(代金引換) 취급(取扱)을 청구한 화물(貨物) 및 차급화물(車扱貨物)

2 신청서(申請書)로 신고(申告)한 것 전호(前號) 이외(以外)의 화물(貨物). 단(但) 자택작성화물(自宅作成貨物) 및 집화부화물(集貨付貨物)을 제(除)함.

3 통지서(通知書)로 신고(申告)한 것 자택작성화물(自宅作成貨物)

4 구두(口頭)로 신고(申告)한 것 집화부화물(集貨付貨物). 단(但) 운송장(運送狀)으로 신고(申告)한 화물(貨物)을 제(除)함.

전항(前項)의 경우 열차(列車)를 전용(專用) 또는 지정(指定)해서 동시(同時)에 운송(運送)하는 차급화물(車扱貨物: 요상액[要償額]을 표시[表示]한 것, 인환증[引換證]을 청구[請求]한 것, 대금인환[代金引換]의 취급[取扱]을 청구[請求]한 것 및 운임요금[運賃料] 착불[著拂]의 취급[取扱]을 청구[請求]한 것을 제[除]함)로서 수하인(受荷人), 착역(著驛) 및 운송조건(運送條件)을 동일(同一)하게 한 동시탁송(同時託送)의 것에 대(對)해서는 1통(通)의 운송장(運送狀)에 의(依)해 수구분(數口分)을 신고(申告)하는 것을 득(得)함.

운송장(運送狀), 신청서(申請書) 및 통지서(通知書)의 양식(樣式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 (양식생략[樣式省略])

제11조(條) 하송인(荷送人)은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화물(貨物)에 대(對)해서는 탁송(託送) 때 1구(口)마다[每] 하기(左記)의 서류(書類)를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제출(提出)을 요(要)하는 화물(貨物)의 종류(種類)

제출(提出)해야 할 서류(書類)

- 1 운임할인화물(運賃割引貨物)로서 할인증표(割引證票)의 제출(提出)을 요(要)하는 것 할 인 증 표(割引證票)
- 2 화약류(火藥類)로서 총포화약류취체령시행규칙(銃砲火藥類取締令施行規則) 제74조(條)의 창고(倉庫)에 저장(貯藏)하는 것을 득(得)해야 할 수량(數量)을 초과(超過)한 것 화약류운반허가증(火藥類運搬許可證)
- 3 사 체(死體) 사망증서(死亡證書), 사망진단서(死亡診斷書), 검안서(檢案書) 등(等) 및 그 사본(寫本)
- 4 외국화물(外國貨物) 운송면장(運送免狀) 전항(前項)의 서류(書類) 중(中) 화약류운반허가증(火藥類運搬許可證) 및 사망증서(死亡證書)는 운송인수(運送引受) 후(後) 이것을 하송인(荷送人)에게 환부(還付)함.

제12조(條) 하송인(荷送人)은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사항(事項)을 신고(申告)하는 것으로 함.

- 1 발역명(發驛名) 및 착역명(著驛名)(다른 혼동하기 쉬운 역명[驛名]이 유[有]할 때 또는 다른 철도[鐵道] 혹은 항로[航路] 착[著]인 때는 그 소속선명[所屬線名] 모두[共]) 및 전용선(專用線) 또는 화물지선(貨物支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것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용선(專用線) 또는 화물지선(貨物支線) 명(名)
- 2 하송인(荷送人)의 성명(氏名) 또는 상호(商號: 이사하물[引越荷物]을 대리탁송(代理託送)하는 경우는 그 소유자(所有者) 또는 세대주(世帶主)의 성명(氏名) 모두[共]) 및 주소(住所) 또는 영업소(營業所) 및 집화부화물(集貨付貨物)에 있어서는 그 집화지(集貨地)
- 3 수하인(受荷人)의 성명(氏名) 혹은 상호(商號) 및 주소(住所) 또는 영업소(營業所) 및 배달부화물(配達付貨物)에 있어서는 그 송달처[届先]
- 4 화물(貨物)의 품명(品名: 인환증[引換證]을 청구[請求]하는 경우는 상표[商標], 등급[等級] 등[等] 상거래[商去來] 상[上]의 칭호[稱呼] 모두[共]) 및 포장(包裝)의 종류(種類) 및 필요(必要)에 응(應)한 그 성질(性質), 기호(記號) 또는 가액(價額)
- 5 화물(貨物)의 품명(品名)마다[每](일곤포[一捆包]¹⁾의 것을 제[除]함) 개수(個數: 산적[散積]하여 개수[個數]의 계산[計算]을 곤란(困難)하게 된 것을 제[除]함) 및 실중량(實重量: 사체[死體], 용기[容器]에 담을 수 없는 가축[家畜] 및 제6조[條]에서 정한 바[所定]의 표준수량(標準數量)에 의[依]해 취급[取扱]하는 것을 제[除]함) 및 용적(容積: 다른 철도[鐵道] 또는 항로[航路] 착[著]의 것으로서 타선[他線] 내[內] 용적[容積]에 의[依]해 운임요금[運賃料金]을 계산[計算]하는 것에 한[限]함)
- 6 급종별(扱種別)
- 7 운임요금(運賃料金)의 지불방법(支拂方法)
- 8 규격 이상의 큰 물품[濶大品]에 있어서는 운임할증(運賃割増)의 기초(基礎)인 길이[長], 중량(重量) 또는 용적(容積)
- 9 화약(火藥), 총용실포(銃用實包), 총용공포(銃用空包) 또는 총용실포(銃用實包) 및 총용공포(銃用空包)에 요(要)하는 뇌관(雷管) 혹은 뇌관부약협(雷管附藥莖)에 있어서는 내용물의 수량(數量)

1) 거적이나 새끼로 꾸려 포장한 것. 또는 그러한 짐.

10 요상액(要償額)을 표시(表示)할 때는 그 액(額: 동물[動物]에 대[對]해서는 가능한 1두 [頭]마다[每] 그 특징[特徵] 및 가액[價額] 함께[共]), 또 1킬로그램(斤)당(當)의 가액 (價額) 40원(圓)의 비율(比率)을 초과(超過)한 경우는 그 가액(價額)

11 대금인환(代金引換)의 취급(取扱)을 청구(請求)할 때는 인환대금액(引換代金額)

12 운송열차(運送列車)를 지정(指定)할 때는 그 지정품(指定品) 간(間), 월일(月日) 및 열차번호(列車番號)

13 부첨인(附添人)을 부가(附加)할 때는 그 원수(員數: 일부[一部] 무료[無料]의 자[者]가 유[有]한 때는 그 원수[員數] 또는 일부구간[一部區間] 부첨[附添]의 경우는 그 구간 [區間]을 모두[共])

14 기타(其他) 필요(必要)하다고 인정(認定)하는 사항(事項)

제20조(條)에 의(依)해 특약(特約)을 한 때 및 화물(貨物)에 유손(濡損) 기타(其他) 이상(異狀)이 유(有)한 때는 그 사실(事實)을 증명(證明)하기 위해 운송장(運送狀)으로 신고(申告)하는 것에 있어서는 운송장(運送狀)으로, 신청서(申請書) 및 통지서(通知書)로 신고(申告)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지서(通知書), 구두(口頭)로 신고(申告)하는 것에 있어서는 집화표(集貨票)의 부분(副本)이 될 만한 일편(一片)에 하송인(荷送人)이 특약조건(特約條件: 또는 그 약호 [略號]) 또는 화물(貨物)의 현상(現狀)을 기재(記載)하고 날인(捺印)하는 것으로 함.

제14조(條)제1항(項)제2호(號) 중(中) 「제12조(條)제1항(項)제3호(號) 및 제4호(號)의」를 「국(局)이 승인(承認)한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(同) 제1항(項)제3호(號) 중(中) 「운송장면초필(運送狀面初筆)의 품명(品名) 또는 운송장(運送狀)의 제출(提出)을 요(要)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18조(條) 지정운송취급인(指定運送取扱人)의 탁송(託送)과 관련(關聯)된 화물(貨物)에 대(對)한 통지서(通知書)는 운송장(運送狀)으로 신고(申告)하는 것을 제(除)하고 그 운송(運送)인수(引受) 전(前)에 지정운송취급인(指定運送取扱人)에게 이것을 작성(作成)시키는 것 유(有)해야 함.

제21조(條) 삭제(削除)